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

▶ 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(2016. 2. 23)

▣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, 이하 농식품부)는 구제역, 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**50㎡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**고 밝혔다.

▣ 그간 농식품부에서는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**'13.2.23일 종축업 · 부화업 · 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이상*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우선 도입**하여 **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**해 왔으며,

○ **'14.2.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 이상****에서 **준전업규모 이상*****('15.2.23) **농가**까지 확대한 바 있다.

* 대규모 사육면적 : 소 1,200㎡, 돼지 2,000㎡, 닭 2,500㎡, 오리 2,500㎡ 초과

** 전업규모 사육면적 : 소 600㎡, 돼지 1,000㎡, 닭 1,400㎡, 오리 1,300㎡ 초과

*** 준전업규모 사육면적 : 소 300㎡, 돼지 500㎡, 닭 950㎡, 오리 800㎡ 초과

▣ **'16.2.23일부터는** 축산업 허가대상이 **가축사육업 소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** 시행되는데 **소규모농가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· 돼지 · 닭 · 오리 50㎡ 초과**하는 농가가 해당된다.

▣ **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**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 수준의 **소독 및 방역시설 · 장비를 갖추고,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기준 등을 준수**하여야 한다.

○ 다만, '13.2.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('16.2.23일)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, **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 ·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**, 소규모 이상으로 **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**을 갖추어야 한다.

▣ 또한, '16.4.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**가금류(닭 · 오리 · 거위 · 칠면조 · 메추리 · 타조 · 꿩) 가축사육시설 면적 15㎡에서 10㎡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.**

▣ 농식품부는 구제역 · 조류인플루엔자(AI)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**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**하여 축산농가가 **허가기준 및 준수사항**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축산법상에 규정된 해당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2년 1회 이상 정기점검 주기를 **연 1회 이상 정기점검토록** 강화하고, 이외 **규모별 · 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갈** 예정이다.

▣ 허가대상인 농가가 **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하게 되고, **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**받게 된다.

*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 **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**.

▣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등 **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,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** 하는 제도이므로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▣ 자세한 내용은 **농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** 〈정보광장- 법령정보〉를 **통해 확인**할 수 있으며,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(044-201-2317)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.

참고 축산업 허가제 개요

▣ 목 적

○ 축사, 소독 · 방역시설, 교육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(축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)

* 축산업 : 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처리업, 가축사육업 (4개 업종)

○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 도모

▣ 확대 범위

○ '13.2.23일에 모든 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처리업 및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해 허가제 도입

○ '16.2.23일부터는 소규모(사육시설 면적 50㎡ 초과) 가축사육업으로 확대

	대규모	전업규모	준전업규모	소규모
도입시기	'13.2.23	'14.2.23	'15.2.23	'16.2.23
소	1,200㎡초과	600㎡초과	300㎡초과	50㎡초과
돼지	2,000㎡초과	1,000㎡초과	500㎡초과	50㎡초과
닭	2,500㎡초과	1,400㎡초과	950㎡초과	50㎡초과
오리	2,500㎡초과	1,300㎡초과	800㎡초관	50㎡초과

* 사육시설 면적 50㎡ 이하인 농가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함

▣ 적용시기

○ 기존에 등록된 준전업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'16.2.22일(1년 이

내)까지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함

○ 신규로 가축사육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허가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 · 군 · 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

▣ 기준과 방법

○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, 위치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을 이수

〈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 내용 〉

시설 · 장비	사육시설		가축사육시설, 환기시설 등
	소독시설		차량 · 대인 소독시설, 차량진입 차단바,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, 신발 소독조 등
	방역시설		울타리나 담장, 출입금지 안내판 등
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	한·육우(방사식)		7.0㎡/마리 〈330㎡당 47마리〉
	젖소(계류식)		8.4㎡/마리 〈330㎡당 39마리〉
	돼지(일관경영)		0.79㎡/마리 〈330㎡당 410마리〉
	산란계	케이지	0.05㎡/마리 〈330㎡당 6,600마리〉
		평사	0.11㎡/마리 〈330㎡당 3,000마리〉
	육계(개방계사)		33kg/㎡ 〈330㎡당 7,270마리〉
	육용오리		0.246㎡/마리 〈330㎡당 1,340마리〉
위치기준	신규허가 제한		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
			도축장 · 사료공장 · 종축장 500m 이내
교육이수	※ 참조 :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		

▣ 벌칙 등 불이익

○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

○ 허가를 받은 농가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

▣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

○ 교육 개요

교육 대상		교육시간	교육비
신규 허가 신청인		24	40,000원
'13.2월 이전 등록	사육경력 3년 미만	12	20,000원
	사육경력 3년 이상	8	12,000원

○ 교육과목 : 축산법규,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, 친환경동물복지 · 축산환경 등

○ 교육기관 : 지역축협, 대학, 축산단체 등 지정된 195개 교육기관